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699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박석원, 유예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김우진, 강은하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7. 6.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4. 선고 2021가단213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647,603원, 원고 B에게 9,902,494원, 원고 C에게 17,980,83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부당이득의 성격과 입증책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각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고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3.3%의 소득세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재산을 침해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는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청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침해부당이득이란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어야 할 정산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산 받을 권리가 객관적인 원고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약(갑 제3호증)에 따라 매출액 전액을 피고에게 제공하여 그 정산금을 지급받은 뒤, 피고에게 제공하였던 급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입증책임 소재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들이 받아야할 정산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정산금 상당액을 원고들이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증거사용방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위한 문서의 제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 심지어 제출명령이 있기 이전에 그 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도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그 전산조회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일 전산조회기록을 모두 삭제하였다면 이는 문서제출명령이 있기 전에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50조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퇴사한 지 오래인 원고들에 대한 전산조회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전산조회기록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기 위해 이를 삭제하여 원고들의 문서사용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의 증거사용방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1)).

① 원고들의 재직 당시 피고의 ‘F’서버에 원고들에 대한 각 거래처별 전산조회기록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원고 A에 대한 전산조회기록은 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조회하여 출력해 둔 전산자료에 불과한바, 원고들이 퇴사한 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전산조회기록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전산자료를 고의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원고 B와 피고의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G와의 통화 녹취록(갑 제2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통화에서 원고 B는 단순히 ‘전산이 주기적으로 자동 삭제되는지’ 여부만을 묻고 이에 대하여 G이 ‘자동 삭제 안 되는데’라고 답변하였을 뿐이어서, 담당기사가 퇴사할 경우 그와 관련된 전산기록이 자동 또는 임의로 삭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G의 위 답변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사 후에도 피고가 위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거나 피고가 문서제출명령 전에 그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수, 판사 김태홍, 판사 정영훈

1)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